

신탁계약서 변경 비교표

변경 전	변경 후
<p>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)</p> <p>①이 투자신탁의 명칭은 "<u>트러스트아시아장기성장주퇴직연금증권자투자신탁[채권혼합]</u>"으로 한다.</p> <p>②·③(생략)</p> <p>④ 이 투자신탁은 법 제233조의 규정에 의한 모자형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으로서 모투자신탁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·2. (생략)</p> <p><신설></p>	<p>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)</p> <p>①이 투자신탁의 명칭은 "<u>트러스트아시아장기성장주40퇴직연금증권자투자신탁[채권혼합]</u>"으로 한다.</p> <p>②·③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이 투자신탁은 법 제233조의 규정에 의한 모자형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으로서 모투자신탁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·2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3. 트러스트중기채권증권모투자신탁[채권]</u></p>
<p>제18조(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)</p> <p>집합투자업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.</p> <p>1. 제17조제1항제1호의 모투자신탁에의 투자는 100%이하로 한다.</p> <p>가. 나. (생략)</p> <p><신설></p> <p>2. (생략)</p>	<p>제18조(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)</p> <p>집합투자업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.</p> <p>1. 제17조제1항제1호의 모투자신탁에의 투자는 100%이하로 한다.</p> <p>가. 나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다. 트러스트 중기채권 증권 모투자신탁 [채권]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80%이하로 한다.</u>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
<p><신설></p>	<p><u>부칙</u></p> <p><u>(시행일) 이 신탁계약은 2015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.</u></p>